

# **MINUTES**

## **The 51st Stated Presbytery Meeting**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Wheaton, Maryland**

**April 16<sup>th</sup>, 2015**

**2 PM**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3211 Paul Dr. Wheaton, MD 20902**

**(301) 864-9255**

**[www.akap.org](http://www.akap.org)**

## The 51st Stated Presbytery Meeting Minutes

[Time and Place] 제 51 차 대서양 한미노회 정기노회가 위튼 커뮤니티 교회에서 2015 년 4 월 16 일 오후 2 시에 열렸다.

[Devotion] 노회장 이기풍 장로의 인도하에 조명철 목사 기도한 후 성경말씀 을 봉독한 다음 전은기 목사의 “분별력있는 노회가 되자”는 제하의 설교 말씀에 이허 김신태 목사와 윤치현 목사의 공동 집례하에 성찬식을 거행한 후 강기석 목사의 축도로 경건회를 마쳤다.

[Welcome & Greetings] 노회장 환영 인사에 이어서 새 총대와 전입해 온 박관준 목사 (은퇴목사) 소개와 방청인으로 로 휘잇빌 한인장로교회 장로들이 소개 되었다.

[Enrollment & Quorum] 회원점명을 하니 다음과 같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노회장 개회를 선언하하였다.

목사: 이영호, 전은기, 안현준, 조은상, 조명철, 김신태, 서보창, 김요셉, 심대식, 배현수, 박연익, 이승환, 윤치현, 강기석, 김범수, 권준, 김지훈, 조호성, 이용일, 하상범, 조은경, 권준, 김정숙, 박관준, 김응배, 조남홍 (Ex. Officio) Excuse:

장로 : 김성삼, 이기풍, 박상열, 조동열, 김영미, 김춘호,

[회순채택] 다음과 같은 회순을 임시로 받기로 통과 되었다.

PM

02:00 1. 개회기도(Meeting Constituted with Prayer)

02:05 2. 경건회(Devotion)

① 사회(Worship leader): 이기풍 장로(부노회장)

② 기도(Prayer): 배현수 목사(선교위원장)

③ 말씀(Sermon): 전은기 목사 (부노회장)

02:20 3. 환영 및 인사(Welcome & Greetings)

① 노회장 인사 및 회원간 인사(Welcome and Greetings Exchange)

② 신임총대 소개(Intro. new commissioners)

③ 환영인사(Host' message): 노회장

02:30. 4. 회원 점명(Enrollment) - 부서기(Associate Clerk) - ,

02:35 5. 회순채택(Adoption of Docket)

- 02:40 6. 회의록 통과(Minutes Approval)
- 03:00 7. 서기보고(Stated Clerk's Report)
- 03:10 8. 회계보고 (Treasurer's Report) -(Treasurer) 이기풍 장로
- 03:20 9. 감사보고(Audit Report)-(Auditor) 강기석 목사
- 03:20 10. 운영위원회보고(General Council Meeting Report)-위원장
- 03:30 11. 각 위원회보고 및 현 의안(Reports & Recommendations of Committees)
- 03:40 a. 후보생 위원회 (Committee on Preparation of Ministry)-안현준 목사
- 03:50 b. 교육위원회 (Committee on Ed. & Congregational Life)-조은상 목사
- 04:00 c. 목회위원회 (Committee on Ministry)-조명철 목사
- 04:30 d. 공천 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김형순 장로
- 04:40 e. 대표 위원회 (Committee on Representation)-이대성 목사
- 04:50 f. 선교/교회개발위원회 (Mission & NCD Committee) - 배현수 목사
- 05:20 13. 특별 위원회보고 사항 (Special Committees & Commission)
- 상임사법위원회
  - 내규수정위원회
  - 총무청빙위원회
  - 총무은퇴준비 위원회
- 05:30 14. 신안건
- 05:40 15. 사무총장보고 및 광고(Executive Presbyter's Report & Announcement)
- 05:50 16. 폐회(Adjournment) 축도 : 박관준 목사

[서기보고] 서기 조남홍 목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 수발 및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통신)

1. Hinesville Open 장로교회 Loan Application Approval Letter
2. 조사위원회 보고서 접수
3. 추상희 장로 서류접수-메릴랜드장로교회 여전도회
4. 총회 Loan & investment department-good standing letter 제출-델라웨어주
5. 명돈의 목사 교회와함께 탈퇴서(2015년 2월 1일자)
6. Big Tent 2015 -University of Tennessee Campus

7. Our Challenging Way: Faithfulness, Sex, Ordination, and Marriage.
8. Investment & Loan Department-2014 Four Quarter Loan Performance Reports
9. Philadelphia First Korean Church-Vacancy Due
10. Union Presbyterian Seminary -Invitation to Luncheon of President
11. First Presbyterian Church, Allentown -Pastor Search
12. Racial Ethnic & Women Department -Mission

#### 발송공문

1.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공동 론 신청처리의 수건
2. 델라웨어주 정부 -대서양한미노회 incorporation renewal 신청
3. 윤치현 목사 연금국 확인 공문
4. 채혁수 목사 재직증명서
5. 베다니교회 면세 증명서
6. 필라제일교회 소속증명서

[회원교회 및 회원교회현황] 서기가 보고한 회원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직교회

번호	교회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리치몬드	이영호		심영순	김성상 Atl.
2	리치몬드중앙	전은기		안희성	
3	메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조동열	
4	메릴랜드제일	조은상		김영미	
5	솔즈베리			김일배	
6	수도	조명철		김응태	
7	워싱턴시온	김신태		김희태	
8	워싱턴에덴	김정훈			
9	워싱턴평강	서보창			
10	필라제일	김요셉			

11	훼잇빌	이승태(임)	김춘호
----	-----	--------	-----

## 미조직교회 및 Fellowship

번호	교회이름	교역자	출석여부	교인대표	출석여부
1.	가나안교회				
2	로고스교회(F)	심대식			
3	워싱턴소망(L)	배현수			
4	솔즈베리사랑(L)	정태은			
5	예루살렘(L)	명돈의		명치만	
6	윌밍턴(N)	박연익			
7	코너스톤(N)	이승환			
8	해거스타운(N)	윤치현			
9	행복한교회(N)	임용락			
10	덴버한인중앙(N)	강기석			
11.	워싱턴동산교회(N)	김범수		박상열	
12.	뉴퓏뉴스장로교회	권준			

\*비활동회원

F=fellowship, N=New Church Development, L=Lack of a quorum

## 회원명단

정회원(Validated Member) - 조직교회

번호	이름	교회	Church Status	Status
1		솔즈베리	Organized	Active
2	김범수	워싱턴동산	Lack of quorum	Active
3	이승태(임)	훼잇빌	Organized	Active
4	김정훈	워싱턴우리	Lack of quorum	Active

5	권 준	뉴퓏뉴스	<i>Lack of quorum</i>	<i>Active</i>
6	조은상	메릴랜드제일	<i>Organized</i>	<i>Active</i>
7	강기석	덴버중앙장로교회	<i>NCD</i>	<i>Active</i>
8	서보창	워싱턴평양	<i>Lack of quorum</i>	<i>Active</i>
9	이영호	리치몬드	<i>Organized</i>	<i>Active</i>
10	전은기	리치몬드중앙	<i>Organized</i>	<i>Active</i>
11	조명철	수도	<i>Organized</i>	<i>Active</i>
12	김요셉	필라제일	<i>Organized</i>	<i>Active</i>
13	안현준	메릴랜드장로교회	<i>Organized</i>	<i>Active</i>

정회원(At-large)-미조직교회 및 부목사

번호	이름	교회'		status
1	배현수	소망교회	<i>Lack of quorum</i>	<i>OGP</i>
2	심대식	Logos fellowship	<i>At large</i>	<i>OGP</i>
3	이대성	예수사랑의 교회	<i>At large</i>	<i>OGP</i>
4	이승환	코너스톤장로교회	<i>At large</i>	<i>OGP</i>
5	이용일	리치몬드 한인	<i>Associate Pastor</i>	<i>Active</i>
6	임용락	행복한교회	<i>At large</i>	<i>OGP</i>
7	윤치현	해거스타운한인교회	<i>Organizing Pastor</i>	<i>OGP</i>
8	정태은	사랑의교회	<i>NCD</i>	<i>OGP</i>
9	김성진(A)	At-Large	<i>In transition</i>	
10	김응배	Bedford 장로교회	<i>At large</i>	<i>OGP</i>
11	김지훈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i>Associate Pastor</i>	<i>Active</i>
12	조호성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i>Associate Pastor</i>	<i>Active</i>
13	박연익	일명턴한인장로교회	<i>Organizing Pastor</i>	<i>Active</i>
14	조은경	우리장로교회	<i>Associate Pastor</i>	<i>Active</i>

\*타교단 or beyond jurisdiction

\*OGP=Organizing Pastor-membership needs to be renewal annually.

\* ? Means membership is in question.

#### 정회원(Specialized Ministry)

번호	이름	교회/사역처	
1	명돈의	예루살렘장로교회	Active
2	손상웅	씨드선교회	?
3	박승환	At-Large/이명수속중	Active
4	조남홍	대서양한미노회	Active
5	김정숙	워싱턴침례대학	Active

#### 은퇴회원(정회원)

번호	이름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1	김성웅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2	조병철	Retired	Retired	RT
3	신동환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 남부지역

##### 조직교회

번호	교회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최은일	
2	발도스타제일	임낙길			
3	사바나	남윤상			
4	예수소망	박대웅			
5	에벤에셀	김창환		박제광	
6	조지아	조진영		이화림	

##### 미조직교회

번호	교회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갈릴리	김세준			

2	라그렌지	이내용
3	새롬	김삼영
4	시온장로	김대왕
5	열린장로	이원걸
6	4 Points	임기운

## 정회원

번호	이름	교회	Status
1	최병호	베다니	Active
2	임낙길	발도스타	Active
3	남운상	사바나	Active
4	박대웅	예수소망	Active
5	김창환	에벤에셀	Active
6	조진영	조지아	Active
7	김세준	갈릴리	Active
8	이내용	라그렌지	Active
9	김삼영	새롬	Active
10	김대왕	시온	Active
11	신동욱	열린	Active
12	임기운	4 Points	Active
13	김범수	베다니	Active
14.	Joseph Kang	베다니	Active
15.	신정인	NKPCP	Active

## 은퇴회원(정회원)

1	이원걸	Retired	HR

회계보고 -사무총장이 대신하다.



수입 결산 (2014년 1월 - 2014년 12월)

대서양한미노회

항목	예산	결산	차액	비율	전년도결산
(상회비)	0.00	0.00	0.00		0.00
가나안교회(상)	0.00	0.00	0.00		0.00
뉴마켓스장로(상)	0.00	0.00	0.00		900.00
리치몬드만인(상)	0.00	5,000.00	5,000.00		6,000.00
로고스교회(상)	0.00	450.00	450.00		0.00
리치몬드중앙(상)	0.00	3,250.00	3,250.00		2,000.00
매릴랜드세일(상)	0.00	1,500.00	1,500.00		1,000.00
매릴랜드장로(상)	0.00	1,400.00	1,400.00		0.00
델버음중앙(상)	0.00	625.00	625.00		625.00
솔즈베리사람(상)	0.00	0.00	0.00		0.00
솔즈베리만인(상)	0.00	3,750.00	3,750.00		2,750.00
수도장로교(상)	0.00	1,000.00	1,000.00		0.00
시온장로교회(상)	0.00	1,500.00	1,500.00		1,000.00
우리살결장로(상)	0.00	500.00	500.00		500.00
위싱턴농산교(상)	0.00	500.00	500.00		1,000.00
위싱턴소망교(상)	0.00	0.00	0.00		300.00
윌밍턴상도교(상)	0.00	300.00	300.00		0.00
코더스본장로(상)	0.00	0.00	0.00		400.00
H.O.P.R.(상)	0.00	0.00	0.00		2,500.00
평강장로교(상)	0.00	0.00	0.00		0.00
필라세일교(상)	0.00	1,500.00	1,500.00		0.00
레거스티몬(상)	0.00	1,000.00	1,000.00		1,000.00
해복한교회(상)	0.00	0.00	0.00		100.00
휘잇필만장로(상)	0.00	6,000.00	6,000.00		8,000.00
(반권기금)	0.00	0.00	0.00		0.00
가나안교회(선)	0.00	0.00	0.00		0.00
뉴마켓스장로(선)	0.00	0.00	0.00		0.00
리치몬드만인(선)	0.00	0.00	0.00		0.00
리치몬드중앙(선)	0.00	0.00	0.00		0.00
델버음중앙(선)	0.00	625.00	625.00		0.00
매릴랜드세일(선)	0.00	0.00	0.00		0.00
솔즈베리사람(선)	0.00	0.00	0.00		0.00
솔즈베리만인(선)	0.00	0.00	0.00		1,000.00
수도장로교(선)	0.00	0.00	0.00		0.00
시온장로교회(선)	0.00	0.00	0.00		0.00
우리살결교회(선)	0.00	0.00	0.00		0.00
위싱턴농산교(선)	0.00	0.00	0.00		0.00
위싱턴소망교(선)	0.00	0.00	0.00		0.00
우리장로교회(선)	0.00	0.00	0.00		0.00
우리살결장로(선)	0.00	0.00	0.00		0.00
윌밍턴상도교(선)	0.00	5,144.73	5,144.73		0.00
코더스본장로(선)	0.00	0.00	0.00		200.00
H.O.P.R.(선)	0.00	0.00	0.00		0.00
평강장로교(선)	0.00	0.00	0.00		0.00
필라세일교(선)	0.00	0.00	0.00		0.00
레거스티몬(선)	0.00	1,223.00	1,223.00		500.00
해복한교회(선)	0.00	0.00	0.00		0.00
휘잇필만장로(선)	0.00	0.00	0.00		0.00
총회그랜드	0.00	0.00	0.00		1,500.00
내회그랜드	0.00	0.00	0.00		54.94
기타	0.00	4,973.88	4,973.88		32,023.92
합계	0.00	40,241.61	40,241.61		63,353.86

이월금: 18,665.59      수입합계: 40,241.61      지출합계: 52,488.23      잔고: 6,408.97

지출 결산 (2014년 1월 - 2014년 12월)

대서양한미노회

과목		예산	결산	차액	비율	전년도결산
상회비	총회상회비	0.00	3,000.00	3,000.00		0.00
상회비	대회상회비	0.00	0.00	0.00		0.00
소계 (상회비)		0.00	3,000.00	3,000.00		0.00
선교비	노회선교비	0.00	0.00	0.00		0.00
선교비	기타선교비	0.00	2,142.50	2,142.50		15,785.91
소계 (선교비)		0.00	2,142.50	2,142.50		15,785.91
노회운영비	회역비및음향비	0.00	2,132.53	2,132.53		1,611.36
노회운영비	각위원회활동비	0.00	4,237.70	4,237.70		2,326.58
노회운영비	총무활동비	0.00	1,051.01	1,051.01		629.39
노회운영비	목회기원리비	0.00	0.00	0.00		0.00
노회운영비	렌트비	0.00	1,500.00	1,500.00		3,260.60
노회운영비	유일리터	0.00	2,772.48	2,772.48		1,712.25
노회운영비	보험비	0.00	0.00	0.00		0.00
노회운영비	각종세금	0.00	0.00	0.00		0.00
노회운영비	회계비용	0.00	0.00	0.00		0.00
노회운영비	소모품비	0.00	1,981.35	1,981.35		1,493.55
소계 (노회운영비)		0.00	13,675.07	13,675.07		11,473.13
교육비	목회자수련회	0.00	0.00	0.00		0.00
교육비	평신도교육	0.00	0.00	0.00		0.00
교육비	목회자교육	0.00	0.00	0.00		0.00
교육비	교사교육	0.00	0.00	0.00		0.00
교육비	중고등부교육	0.00	0.00	0.00		0.00
소계 (교육비)		0.00	0.00	0.00		0.00
사례비	사례비	0.00	0.00	0.00		4,678.40
사례비	파우경	0.00	11,000.00	11,000.00		10,956.00
사례비	고용자세금	0.00	1,430.70	1,430.70		120.00
소계 (사례비)		0.00	12,430.70	12,430.70		15,754.40
메디칼랜선	메디칼랜선	0.00	15,102.83	15,102.83		14,325.26
소계 (메디칼랜선)		0.00	15,102.83	15,102.83		14,325.26
기타	예비비	0.00	0.00	0.00		0.00
기타	기타	0.00	6,137.13	6,137.13		383.84
소계 (기타)		0.00	6,137.13	6,137.13		383.84
합계		0.00	52,488.23	52,488.23		57,722.54
이월금: 18,655.59		수입합계: 40,241.61		지출합계: 52,488.23		잔고: 6,408.97

Account Details Print Friendly

https://secure.bankofamerica.com/ry/saccountrst/details/dep/ptnt-friendly.gp?acc=0066...

Date	Description	Status	\$Amount	\$Available Balance
01/05/2015	CHECKCARD 0102 USAIRWAYS 03775156163 ATLANTA GA 24792625003246900052764...	C	-317.20	5,744.62
01/05/2015	CHECKCARD 0102 USAIRWAYS 03775156163 ATLANTA GA 24792625003246900052756...	C	-317.20	6,061.82
01/02/2015	Monthly Fee for Business Advantage	C	-29.95	6,379.02
<b>Statement as of 01/01/2015</b>				
12/29/2014	CHECKCARD 1228 HST*Bbok.net 866-5734678 UT 24906414362012575964221 RECURRING...	C	-143.88	6,408.97
12/24/2014	CHECKCARD 1223 INO*INTELLIUS.COM/SB 877-893-6132 WA...	C	-19.95	6,552.85
12/22/2014	Check 1013	C	-1,000.00	6,572.80

[질문] 회계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범수 목사가 남부지역 노회에서 오는 상회비의 기록이 없다고 질문하다 이에 대해 기타란에 기록 된 것과 대회 상회비가 남부지역 노회를 통해서 올라간 것들은 남부노회 재정부에 별도로 기록 되어 있다는 대답이 있었다.

### 감사보고 -강기석 목사

1. 은행스테이트먼트와 영수증이 더러 빠진 것이 있고 더해진 것이 있었다. 재검토한 결과 이는 개인 어카운트로 쓰여진 것들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2. 현재 노회에는 빚들이 있는데 청산하고 나가기를 노력해야 하겠다.

### [제안]

1. 각교회가 상회비를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
2. 재정위원회가 있는데 충분히 활동하지 못한 것 같다.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3. 상회비와 선교비를 각각 체크로 지불하여 완전히 지불하여야 하겠다.
4. 교육위원회 지출 사항이 많지 않은 것은 청소년 리츠릿을 통해 수입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질문사항]-이영호 목사의 질문, 서유석 장로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했고 사무총장은 회계사이므로 세금보고 마감기일이 가까와 오지 못한 것 같고, 통지는 했으나 참석치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왜 헌법이나 내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무총장은 질문자의 교회도 그렇게 하느냐 되묻고, 관례대로 해 왔으며 내부 감사가 감사하는 것도 헌법이 말하는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라 대답했다.

이상의 보고가 있는 후 질의 응답이 있는 후에 박관준 목사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가부를 물어 회계 보고와 감사보고를 함께 받았다.

## 운영위원회 보고

대서양한미노회 운영위원회가 2015년 4월 9일 오후 1시 30분 노회 사무실에서 열려 노회장 이기풍 장로 인도하에 경건회를 갖고 안건을 처리하다. 찬송가 141 장을 부른후 배현수 목사의 기도예 이어 성경 로마서 5:12-19 절을 읽은 후에 노회장 말씀을 전하다. 이어서 회원점명을 하니 정족수가 되므로 운영위원장 개회를 선언하다.

**참석자** : 이기풍, 조은상, 조명철, 배현수, 조남홍, 김형순(카톡대화), 박종우(카톡 및 전화).  
조은경 목사(속기록); Excuse: 이대성, 강기석, 이선자, 결석 : 안현준, 서유석,

**헌의 및 보고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보고 및 헌의합니다.

1. 차세대 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하다.
2. 총회수익안 투표 및 노회시 예배 준비위원을 정하다. 사회 노회장, 설교: 부노회장  
전은기 성찬: 윤치현, 김신태 (성찬기를 준비해 오도록한다)

[수정안] 50 차 정기노회시의 회계가 아직 유효하므로 다음 사항은 삭제하기로 하다.  
줄친부분은 삭제한 부분이다.

3. ~~H.O.P.E.교회가 교단을 떠나면서 내놓은 \$30,000 이 노회 재정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수신자는 김범수 목사, 김성삼 장로로 참조는 김규형  
목사에게 공문을 내기로 하다.~~
4. ~~4월 15일까지 노회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4월 16일 정기 노회의 결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5. 벨하 신앙고백등 헌법 수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이미 웹상에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6. 북노회 남노회식으로 호칭하지 말고 북쪽 지역 및 남쪽 지역 노회로 부르기로 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연구하여 양지역 대표들이 토의하고 연구하여  
내규에 반영기로 노회에 의견을 내놓기로 하다.

[수정안과 사과]: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당회장 이영호 목사가 제 50 차 정기노회에서  
발생했던 상황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다음 사항을 삭제하기로 동의와 재청이 있을 후 회장  
가부를 물어 통과하였고, 이어서 이영호 목사 노회 앞에 사과하다.

7. ~~50 차 정기노회와 50-1 차 임시노회에서 야기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처리를 하기로 하다.~~

~~(ㄱ)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에 당회록을 제출하게 하여 교제 총대 문제가 당회에서 허락이 났는지 등을 검토한다.~~

~~(ㄴ) 리치몬드 한인장로 교회 당회에 노회 Host 문제에 관하여 경고하고 사과문을 문서로 작성케 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다.~~

~~(ㄷ)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는 노회를 유치하면서 전혀 교통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주 예수 교회가 이를 대신 한 점에 대하여.~~

~~① 노회시에 자기들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장로는 노회원들에게 “우리교회이니 퇴장하라.”고 하는 등 노회원들을 모욕하고, 회의중에 리치몬드 장로교회 장로는 폐회 동의를 하고 담임목사는 재청을 하는 등 비 상식적인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당회 차원에서 해명하고 사과할 것.~~

~~② 위 사안중 당회록에 관한 검사는 목회위원회에서 관장하기로 한다.~~

~~③ 50-1 차 임시노회시 물리적 행동 및 거짓증언한 회원처리 문제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IC 구성및 사회법으로 발전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무 총장이 증재한 후 그 결과를 따라 다음 회기에 검토하기로 하다.~~

#### [공천위원회에 관련 된 협의 및 결정 사항]

(ㄱ) 상임사법위원회 -2 명이 다시 공천 되어야 한다. 이기풍장로 대신 그리고 신동환 목사 사임

(ㄴ) 4/16 일 12 시에 우미가든에서 모여서 위원회를 할 예정이다.

(ㄷ) 총대가 아니거나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장로가 임원을 맡는 것은 재고 하여 시정 키로 지침을 주기로 하다.

(ㄹ) 회계등 임원 선출 및 대회 총대등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는 것에 대한 자격을 리뷰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다.

(ㅁ) 운영위원회의 장로와 목사 균형 문제를 잘 다루어 한 두 교회가 장악하는 일을 지양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내규 수정위원회에서 연구해 보도록 의견을 교환하다.

#### 특별위원회 - 구성및 경과보고

- ① 사무총장 및 서기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병호 목사
  - i. 청빙위원회에서 job description 및 terms of call 만들되 운영위원회를 거쳐 노회에 헌의 하도록 한다.
- ② 내규수정위원회 - 위원장 배현수 목사
- ③ 총무은퇴 준비 위원회 - 조은상, 배현수, 김삼영, 김성삼, 안현준, 김범수, 이영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위원장인 김성삼 장로는 회원권이 없으므로 교체문제를 차기 노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기타사항

- 1) NCKPC 워싱턴 개최에 따른 노회가 KPC 와 더불어 협력하기로 하고 노회 회원교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2) PJC 조사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청취했고 조사기간 동안의 피의자인 김윤곤 목사의 생활비를 메디칼 펜션을 제외한 3 개월 정도 지불케 하는 방안을 해당교회 당회와 협의하기로 하다.
- 3) 폐회 : 조명철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행정지도위원회 구성동의안**: 웨잇빌 한인 장로교회 수습을 위한 행정지도위원회 (Special Administrative Committee)구성 동의안내기로 하고, 동의안 초안을 목회위원회가 맡아 검토한 후 노회에 제청하기로 하다. 이 동의안은 목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헌의 하는 것으로 하다. (별첨참조)

## 각위원회 보고 및 헌의사항

### 목회위원회 보고(조명철 목사)

1 차 목회위원회보고(2015/3/25) :

- 1) 로고스 교회와 심대식목사 탈퇴문제와 예루살렘 교회와 명돈의 목사 탈퇴 문제는 배현수 목사, 조은상 목사, 조명철 목사가 면담하기로 하다.
- 2) 우리장로교회
  - a. 청원을 받아 당회를 구성하다: 조명철 목사 (당회장), 조은상 목사, 이기풍장로, 최창규 장로
  - b. 4 월 5 일자 사임서는 당회에서 최종 날자를 조정하고 후속처리는 당회가 한다.

- c. 당회가 모여 4월 12일 임직식은 연기하기로 하고 날자는 당회가 다시 정하기로 한다.
  - d. 목회관계 해소 공동회의를 4월 26일에하기로 하다.
- 3) 휘잇빌장로교회
- a. 목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3월 29일 예정된 임직식은 거행하기로 한다.
  - b. 이배용씨와 안진섭씨는 배제하기로 하다. 그 이유를 명기한다.
  - c. 남은 문제 처리를 위해 행정지도위원회(Special Administrative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하다.
  - d. 후속보고 : 임직식은 3/29 거행했다. 조명철설교, 박종우장로님 축사.
  - e. 당회와 많은 대화를 교회가 노회에 대한 불신이 다소 해소 되었다
- 4) 솔즈베리 장로교회 청빙문제
- 5) 13명의 후보자가 들어 왔으며 6월말까지 일정을 마치려고 현재 개별 면담중이다.
- 6) 5월 17일 김성원 전도사 목사 안수 예배를 드리기로 하다.

**교육위원회보고(조은상 목사)**

- 1) KPC 유쓰그룹 많이 참석하도록 권장한다.
- 2) Sexual Misconduct 교육의 건은 본회의때까지 시간과 장소 내용을 협의하여 보고토록 한다. 매노회때마다 1년에 한번할것을 건의를 받다

**후보생위원회: (안현준목사)** - 위원장 결석으로 아무 보고가 없었다

**공천위원회: (김형순 장로) /조은상목사**

공천위원회는 상임사법위원 2019년 조에 김정숙 목사와 최창규 장로를 천거했고 회계로는 안희성 장로를 천거하여 인준을 받았다.

년도	북부지역	남부지역	비고
	이사회: 이사장 서유석(장)	김창환	
Class 2015	명돈의, 성낙인(장)	이원걸	
Class 2016	전은기, 김영미(장),	최병호	
Class 2017	안희성(장), 서유석(장),	김창환	



	상임사법위원회: 강기석	김세준	
Class 2015	이성자(장)조동열(장)	이원걸 김세준 박대웅 최병호	
Class 2016	강기석		
Class 2017	박관준,		
Class 2018	김영미(장)		
Class 2019	김정숙, 최창규(장)		
Class 2020	김성웅,		
	목회위원회: 조명철	최병호	
Class 2015	1 년조:김범수,배현수,이기풍(장),	최병호,최은일(장)	
Class 2016	2 년조: 박종우(장),김형순(장),		
Class 2017	3 년조:조동열(장),조은상,조명철,		
	후보생위원회: 안현준,	김범수	
Class 2015	1 년조: 조은경, 김성원,	김범수 ,	
Class 2016	2 년조: 김윤곤, 조호성		
Class 2017	3 년조: 안현준, 김정숙		
	공천위원회 : 김형순	신동욱	
Class 2015	1 년조: 김형순, 김응배 ,조은상,	신동욱	
Class 2016	2 년조: 김정훈, 김영미,		
Class 2017	3 년조: 이영호, 윤치현, 김신태		
	대표위원회: 이대성	김해룡(장)	
Class 2015	1 년조: 박연익,김정숙	김해룡(장)	
Class 2016	2 년조: 이대성,조명철 ,		
Class 2017	3 년조: 채혁수,성낙인(장)		
	교육위원회: 조은상	남윤상	
Class 2015	1 년조: 권 준, 김성원	조을래(장)	
Class 2016	2 년조 : 조신일, 김범수		
Class 2017	3 년조: 조은상, 김지훈,		
	선교개발위원회: 배현수	조진영	
Class 2015	1 년조: 배현수 ,정태은,	신남순(장)	
	2 년조: 이승환, 손상웅,		

Class 2016 Class 2017	3 년조: 김요셉, 하상범,		
	재정위원회: 안희성(장)	선교/재정: 임낙길	
Class 2015 Class 2016 Class 2017	1 년조: 이용일, 임용락, 2 년조: 박상열, 서보창, 3 년조: 조동열, 서유석	임낙길, 레이놀(장)	

총무청빙위원회 7 명 (위원장) 최병호 목사

(북) : 전은기, 조은상, 김형순, 박종우, (남부지역)최병호, 신정인, 남윤상

내규 수정위원회 7 명 (위원장) 배현수 목사

(북): 배현수, 박종우, 김범수, 조명철 (남부) 최병호, 김상영, 박대웅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 김성삼 장로의 회원권 자격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에 본인 의 입장설명을 들은 후 다음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통과하다.

~~총무은퇴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성삼,~~

~~김성삼, 이기풍, 이쌍석, 이영호, 김범수, 안현준, 배현수, 조은상, 김삼영~~

**대표위원회** (이대성 목사) : 공천위원회와 같이 협력하여 좋은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전달받다.

**선교개발위원회** (배현수 목사): 특별사항 없음. 앞으로 worshiping community 신청 및 지원을 선교 개발 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일을 전달 받다.

###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pproved By the 221st General Assembly (2014)  
And recommended to the Presbyteries for their votes

언법 개정안 항목별 내용		찬성	반대	기권
14-1. Cofession of Belhar	<b>Shall the confession of Belhar be included in the book of confession?</b>	33	3	

14-A.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p>Shall G-2.0509 of the Form of Government be amended by adding the following new paragraph at the end of the section?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in italic.]</p> <p><i>“Whenever a former teaching elder has renounced jurisdiction if the midst of a disciplinary proceeding as the accused, that former teaching elder shall not be permitted to perform any work, paid or volunteer, in any congregation or entit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i></p>	34	2	
<p>14-B. Special Committee to review the Preparation for Ministry Process and Standard Ordination Exam.</p> <p>B1. Finanal Assessment</p>	<p>Shall G-2.0607 be amended as follows? [Text to be deleted is shown with strike-through;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in italic.]</p> <p><i>“A candidate may not enter into negotiation for his or her service as a teaching elder without approval of the presbytery of care. The presbytery shall record when it has certified a candidate ready for examination by a presbytery for ordination, pending a call. Evidence of readiness to begin ordered ministry as a teaching elder shall include:</i></p> <p><i>“a. [Text in a.–c. remains unchanged.]</i></p> <p><i>“d. <del>satisfactory grades, together with the examination papers</del> examination materials, together with evaluations that declare those materials satisfactory in the areas covered by any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Such examinations shall be prepared and administered by a body created by the presbyteries.”</i></p>	33	0	
B2. Accommodations	<p>Shall G-2.0610 be amended as follows? [Text to be deleted is shown with strike-through;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in italic.]</p> <p><i>“G-2.0610 <del>Exceptions</del> Accommodations to Particular Circumstances</i></p> <p><i>“<del>By a three-fourths vote,</del> a presbytery <i>When a presbytery concludes there are good and sufficient reasons for accommodations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an individual seeking ordination, it may, by a three-fourths vote, waive any of the requirements for ordination in G-2.06, except for those of G-2.0607d. If a presbytery judges that there are good and sufficient reasons why a candidate should not be requir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G-2.0607d, it shall approve by three-</i></i></p>	35	0	

	<p>quarters vote some alternate means by which to ascertain the readiness of the candidate for ministry in the areas covered by the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A full account of the reasons for exception <i>any waiver or alternate means to ascertain readiness shall be included in the minutes of the presbytery and communicated to the presbytery to which an inquirer or candidate may be transferred.</i>"</p>			
14-C. Child Protection Policy.	<p>Amend the fourth paragraph of G-3.0106 as follows: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in italic.]</p> <p><i>"All councils shall adopt and implement a sexual misconduct policy and a child protection policy."</i></p>	35	0	
14-D. Minimum composition of Presbytery.	<p>Shall the second paragraph of G-3.0301 of the Form of Government be amended as follows?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in italic.]</p> <p><i>"The minimum composition of a presbytery is ten duly constituted sessions and ten teaching elders, unless an exception is approved by its synod and the General Assembly giving consideration to the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presbyteries in G-3-01 and G-3.03."</i></p>	34	0	
14-E. Interreligious Stance	<p>Shall G-5.0102 be amended as follows: [Text to be deleted is shown with a strike-through;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as italic?]</p> <p><del>"The Presbyterian Church (U.S.A.) at all levels seeks new-will be open to and will seek opportunities for conversation and understanding</del> <i>respectful dialogue and mutual relationships with non-Christian entities and persons from other religious [entities] traditions. It does this in the faith that the church of Jesus Chris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a sign and means of God's intention for the wholeness of all humankind and all creation."</i></p>	20	16	
14-F. Marriage	<p>Amend W-4.9000 by striking the current text and replacing it with the following: [Text to be added or inserted is shown in italic.]</p> <p><i>"Marriage is a gift God has given to all humankind for the well-being of the entire human family. Marriage involves a unique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to love and support each othe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 sacrificial love that unites the couple sustains them as faithful and responsi-</i></p>		36	

	<p><i>ble members of the church and the wider community.</i></p> <p><i>“In civil law, marriage is a contract that recogniz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arried couple in society. In the Reformed tradition, marriage is also a covenant in which God has an active part, and which the community of faith publicly witnesses and acknowledges.</i></p> <p><i>“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jurisdiction in which they intend to marry, a couple may request that a service of Christian marriage be conducted by a teaching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ho is authorized, though not required, to act as an agent of the civil jurisdiction in recording the marriage contract. A couple requesting a service of Christian marriage shall receive instruction from the teaching elder, who may agree to the couple’s request only if, in the judgment of the teaching elder, the couple demonstrat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marriage covenant and commitment to living their lives together according to its values. In making this decision, the teaching elder may seek the counsel of the session, which has authority to permit or deny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i></p> <p><i>“The marriage service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is covenant and to the forms of Reformed worship, under the direction of the teaching elder and the supervision of the session (W-1.4004–.4006). In a service of marriage, the couple marry each other by exchanging mutual promises. The teaching elder witnesses the couple’s promises and pronounces God’s blessing upon their union. The community of faith pledges to support the couple in upholding their promises; prayers may be offered for the couple, for the communities that support them, and for all who seek to live in faithfulness.</i></p> <p><i>“A service of worship recognizing a civil marriage and confirming it in the community of faith may be appropriate when requested by the couple. The service will be similar to the marriage service except that the statements made shall reflect the fact that the couple is already married to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ivil jurisdiction.”</i></p> <p><i>“Nothing herein shall compel a teaching elder to per-</i></p>	<p>0</p>		
--	---	----------	--	--

	<i>form nor compel a session to authorize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 that the teaching elder or the session believes is contrary to the teaching elder's or the session's discernm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i>			
--	--	--	--	--

남부지역 노회 회원들의 투표결과가 포함된 숫자임

## 웨잇빌한인장로교회를 위한 행정지도위원회 구성동의안

(The 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 for FKPC)

교회문제의 배경과 역사

(2014 년도)

[Brief History]

김윤곤 목사 부임 이후 3년차가 채 되지 못한 시각부터 목회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내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목사의 목회는 정상으로 회복 되어 가는 듯했다. 그러나 2013년 웨잇빌장로교회 당회 및 휴무장로 일동 10여명은 수개 항목의 목회개선 요구서를 작성 담임목사를 찾아가 요구한바 있으며, 그들의 건의에 대하여 김목사는 철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자중하여 문제는 일단락 된 듯이 보였다. ?” 그러나 2014년 3월 담임목사의 비행을 담은 고소문이 당회에 접수 되면서 잠재 되었던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올라 당회 서기와 당회원들은 담임 목사에게 해임통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교회접근 및 설교를 금지시켰다. 이 사실은 당회서기가 아닌 한 휴무 장로의 (김춘호장로) 전화에 의해 노회에 보고 되었다. 노회 담당자는 당회가 받은 고소건은 당회의 관할이 아닌점을 주지 시키고, 노회에 이관토록 하였으며, 당회가 담임 목사를 해고 시킨 조치는 불법임을 지적해 준바 있다. 고소 사건은 노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 조사위원회가 2014년 10월 24일에 구성 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를 마치고 2014년 1월 17일에 마치고 조사 결과를 노회서기에게 전달한 후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또한 이 사건은 목회위원회에 보고 되었고 목회 위원회는 대책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노회 목회 위원회는 교회도 보호 하고 목회자도 보호 하기 위하여 당회와 담임목사를 별도로 면담하고 중재를 시도하였다. 동 모임에는 휴무장로등 10여명이 출석하였다. 그 가운데 당회서기(이배용 장로)와 휴무장로(김춘호 장로) 한명만 대표로 출석 시킨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피차가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 사태 해결을 시도하였고 김목사와 당회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해 김 목사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휴무하고 교회접근 및 사역을 중단 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에 사임하기로 하되, 휴무 기간 동안의 생활비

<sup>1</sup>상당 시간이 흐른 이유는 목회위원회의 조정안이 원만하게 진행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목회 위원회가 당회에 담임목사 퇴임에 관련한 사람들은 일년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근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반발로 대회에 노회를 고소하는 등 문제가 확대 되어 대회로부터 통고를 받는 등 조사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 되었다.

지불을 약속 받았으며 그 기간은 이미 종료 되었다. 같은 날 회의에서 교회와 목회위원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이쌍석 장로(목회위원장)와 김성삼 장로를 liaison 으로 임명하고, 거리 관계상 추천을 받아 이영호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위의 합의서의 사항들은 대체로 이행이 잘 되어왔으나 당회는 행정처리 상의 미숙한 점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에게 오류를 지적해 주었다. 또한 당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당회가 헌법에 위배된 일을 한 것에 대한 조치는 즉시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제 수습 과정에서 과도기의 목회자로 임시설교자 3 명을 추천이 되었고<sup>2</sup> 그 중에 당회가 요청해 온 이승태 목사를 임시 목회자로 사역 하도록 하였으며 당회장 권한은 주지 않았다.<sup>3</sup> 목회 위원회는 문제 처리 방법을 두고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sup>4</sup> 그로 인하여 당시 목회위원장과 당회장 및 일부 위원들과 사무총장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교회를 두고 양측이 긴장하기에 이르러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 2014 년도 당회의 문제행동

첫째, 담임목사 주변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

김윤곤 목사의 사임에 즈음하여 분명히 요구 받았던 사실은 고소인이 고소한 죄를 인정 해서가 아니라 목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사임하기로 약속 한 바 있으며 그러한 정신하에서 합의서가 작성 되었다. 그러나 당회 서기를 비롯 한 두명의 휴무 장로들을 중심 혹은 그 가족들을 통해 김 목사는 성적 비행 때문에 사임한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담임 목사를 도와 봉사를 하던 일부 교인들이나 집사회 구성원들을 압박하므로써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호소문과 청원서가 계속 올라온바 있다.

둘째, 행정미숙 및 부적절한 Leadership

노회는 담임목사가 사임을 했으니 서로 교회를 잘 섬기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평화와 화해를 늘 권고했으나 화해와 평화 보다는 치리로 일관하여 교인 일부가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남아 있어도 계속 노회에 하소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회가 받은 대부분의 항의나 이메일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한 일부 교인들이 계속 보낸 편지이거나 고소장이며 주 내용은 당회에 대한 불만이고, 당회서기의 처신에 대한 문제들이며 당회 서기의 행정적인 미숙과 처신 때문에 문제를 더욱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셋째, 공정성 결여

<sup>2</sup> 박관준 목사, 이원걸 목사, 이승태 목사.

<sup>3</sup> 이승태 목사에 대해서는 김성웅 목사의 추천도 있었다.

<sup>4</sup> 목회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당회에 통지한 사실을 두고 당시 목회 위원장인 이쌍석 장로는 이를 무효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항의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안 하나는 당회는 교인들을 치리하는데 노회가 어째서 ‘당회의 잘못’은 목과 하느냐면서 공평한 처리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말한 당회 서기의 행정미숙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당회 서기는 당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회에 항의하거나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누가 상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따라서 장로교의 기본 헌법부터 철저히 교육 시켜야 할 의무가 노회에 있다고 본다.

#### 넷째, 당회장의 월권행위

당회는 당회서기의 이름으로 김목사에게 교인들과의 접근을 하면 사례비를 단절하겠다는 경고 편지를 보냈으며 이를 추적한 결과 당회장이 허락한 일이었다. 본 노회는<sup>5</sup> 당회장에게 이런 권한을 준비 없으며 엄연한 월권적 행동으로 장로교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 다섯째, 공평하지 않은 불합리한 구조 및 대표성 무시

교인의 80%가 여성들로 구성 되어있으며 배우자들의 상당한 수가 다문화 가정인데 비해 교회는 몇사람의 남성이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고, 당회원 수도 교인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4명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으며, 당회가 여신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골고루 주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독점 되는일은 장로교 정신과 규례서에 너무나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의 시정은 행정 지도 위원회가 앞으로 적극 지도해야 할 사안이다.

### [2014 년도 목회위원회 문제]

당회원 4 사람 중 적극 개입자는 당회서기 1 명이며 당회 서기가 휴무장로들과 연대 본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자들만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장로교 규례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철저히 외면 하고 있는 것은 목회위원회가 당회장만 파송해 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 목회위원회 위원간의 의견분열: 상소문과 통신등 당회장의 보고는 항상 교회가 잘 되가고 있다는데 비해 불만은 계속 접수 되므로 교회를 방문하여 사실을 파악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는 제안은 목회위원장을 비롯한 한 두 사람의 반대로 계속 좌절 되었다. 그 대안으로 방문대신에 목회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사무총장이 초안하여 공문을 보낼 것을 요청 이를 통과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김윤곤 목사에게 야밤중에 찾아가 해임을 통고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데 대해 이일에 깊이 관여한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1년간 쉬고 기도하며 자중 할것. (담임목사가 불미스럽게 사퇴한 경우 보통 3년은 시무정지 한다.)

<sup>5</sup> 사무총장이 경고하였다



- (2) 부목사 부인들이 김윤곤 목사 사임과 관련한 문제에 깊이 관여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에 자발적으로 사임하게 하고 교단소속 목회자로 교체 할것.
- (3)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사회와 당회가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보여줄것.
- (4) 시무장로와 휴무장로가 함께 당회하는 것이 오해로 비추이기 때문에 vote 는 시무장로 만하고 휴무장로들이 당회에 참석하게 하지 말것과 혹 보고 사항은 개인적으로나 문서로 받을 것.

### 이에대한 당시의 목회위원장과 당회의 반응:

**목회위원회 위원장의 반응:** 사무총장의 공문 발송은 목회위원회가 결의한 바 있으며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메일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 목회위원장은 이는 무효라고 이메일을 보내 무효화를 선언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회에 한미노회가 리더십을 잃었으니 대회가 나서달라는 청원을 보내게 만들었다.

**무효선언의 이유:** 목회위원장의 허락이 없이 공문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보내지 말라고 했다.<sup>6</sup>

### 당회의 반응

**첫째.** 당회 서기의 이름으로 사무총장을 미국사회에서 큰 범죄인 문서위조범으로 몰았다.

**둘째.** 또한 당회장의 보고와 교회에서 올라오는 탄원서등을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부노회장인 이기풍 장로가 교회를 방문하여 현실을 보고 판단 하겠다는 판단아래 교회방문을 할 것을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당회에 통보 간담회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방문전부터 저지를 받았는데 공개적이고 선명해야 할 사안이 왜 방문을 막는지 의구심을 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소개조차도 없었으며 왜 왔느냐식의 대답만 듣고 오기에 이르렀다<sup>7</sup>.

**셋째.**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이메일에 당회장은 접대할 준비를 토요일 당회때 의논했다고 대답했으나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었고 소개할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하나 부노회장은 같은 지역에 노회를 가입고자 하는 “퀘잇빌 예찬장로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우들을 만나 보는 다른 임무도 있었던바 시간에 관계 없이 노회장의 유고로 노회를 대표하는 부노회장이 공동회의를 참관하고 있어서 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치 않았으며 이러한 무례는 노회 처리에 의해 해당 교회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로 판단 된다.

<sup>6</sup>목회위원장은 공문을 허락하고 안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공문은 본인이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서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간다. 한 두 사람이 보내고 안 보내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님을 오해하고 있다. 장로교 규례를 모르고 있다. 목회위원장은 사회자일 뿐이지 그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오해하고 있다.

<sup>7</sup>이에 대하여 사무총장은 개인자격이든 공인으로도 예의에 벗어난 일이며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누구에게 독점 된 일이 아니며 절차를 밟을 일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방문하면 환영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새교인이나 방문 교인도 소개하는 관례가 있는 바 빈약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은 개탄할 일이라고 피력한바 있다.

웨잇빌 한인장로교회의 사태는 한 두 사람의 독주 혹은 내분 상태에 있는 목회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 되었고, 웨잇빌한인장로교 당회도 교인들의 리더로서 모두를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바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상회가 결정하고 관심하는 일에 일관적으로 불복종하는 태도를 시정하지 않으면 후임목회자 청빙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 해 볼 때에 행정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사역이 감당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시킬 사명과 임무가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으며, 2015 년도에 목회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다.

### 2015 년 3 월 현재의 사태의 발전

2014 년 당시 당회장 이영호 목사와 liaison 김성삼 장로의 지도 아래 당회는 “후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했고, 내규를 수정하여 통과 시킨 후에 신 공천 위원회에 의해 공천 작 업을하여 1 차에 장로 2 명, 2 차에 장로 2 명을 선출하여 임직식을 1 월 15 일에 거행하려고 하는 것을 노회가 유보하라는 결정에 순응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3 월 26 일 노회가 허락 할 것을 예상하고 3 월 29 일 주일 예배후에 임직식을 선언해 놓고 있어서 새로 임명된 목회위원회는 3 월 20 일 당회장과 만나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서 목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에 제청 하기로 하였다. 휴회중에는 노회를 모아야 할 만큼 중대사항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관행에 따라 임직식을 허락 하되 수습해야 할 일들과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을 실행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 위원회 (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를 구성 동의안을 본노회에 제출한다.

#### 행정지도위원회(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구성

상회에 불복종하는 일은 미국장로교 헌법이나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철저히 규명 되고 교정 되어야 했으며 그 이후 당회장 이영호 목사가 교체 되고 이승태 목사가 당회장으로 임명 된 후에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행히 2015 년도 새로 구성된 목회위원회의 개입으로 임시조치로 임직식은 거행하게 하였으나 남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위원회 (The 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장로교 형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청한다.

#### 경과사항 및 목회위원회 제청

목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행정지도위원회(The 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하고 웨잇빌 장로교회에 다음과 같이 허락하였다.

1. 임직식은 허락하되 지난해 당회 서기로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 악화에 일조하고 상회의 명령에 순종치 않은 이배용 장로는 불허하며,
2. 목회위원회와 교인들과의 대화 시에 방송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전임목사를 비방하고 도둑으로 모는등, 덕이 되지 않은 안전섭씨도 배제한다.

## [위원회의 권한]

1.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 될 때까지 앞으로 1 년간 위원회의 지도를 계속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2. 노회의 결정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사항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이승태 목사의 당회장권을 회수하고 당회는 사회하게 하나 당회장 권한은 위원장이 가진다

## [위원회의 임무]

1. 교회를 방문하여 각 기관 및 임직자들과 대화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지도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통지하는 임무
2. 장로 집사등 교회 중직들에게 미국장로교 헌법을 교육시키고 훈련 시키는 임무
3. 내규수정 하는 것을 도와 보다 헌법정신에 맞는 내규 만드는 일
4. 당회 구조를 shared power 로 개편하는 일
  - A. 여성 리더십을 현재 2 명에서 배수로 혹은 그 이상을 세우는 일
  - B. 전체 당 회원 수가 각 년 조별 총 10 명 이상으로 구성 하는 일
  - C. 다문화 교인들의 리더십도 참여케 하고 확보하는 일
5. 청빙위원회를 새 내규에 의하여 재편하도록 돕는 임무
6. 교회안의 질서를 회복하는 임무

## [위원회 구성]

행정 지도위원회는 비교적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되어 공평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과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목회위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 조명철 (목회위원장), 서기: 박종우 장로, 위원: 이기풍 장로, 조은상 목사, 박종우 장로, 배현수 목사, 김형순 장로, Ex Officio : 사무총장 ,

## [기타임무]

행정지도 위원회는 위에 제시한 시행 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를 동위원회가 해산 될 때까지 노회에 보고하는 일이며 주어진 사항 외의 결정 사항은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